

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교원의 강의시간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시간) ①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별표1>과 같다.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별표2>와 같다.

③ 산학협력중점교원, 특훈교수, 교원업적평가 유형군 “나”군 및 “다”군의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3.1.)(개정 2025. 9. 19.)

제3조(책임시간의 면제) 삭제(2025.3.1.)

제3조의 2(대학원 강의의 책임시간 인정) ① 각 대학원 소속이 아닌 전임교원의 대학원 강의는 매 학년도 최대 3시간까지 책임시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각 대학원 소속을 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음악대학 및 현대실용음악학과 소속 전임교원의 대학원 강의는 매 학년도 최대 4시간까지 책임시간으로 인정한다.

③ 매 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 시점의 수강인원이 5명 이상인 대학원 강의는 매 학년도 최대 3시간까지 추가로 책임시간을 인정한다.

(본조 신설 2025.3.1.)

제4조(책임시간 미충족) 폐강이나 기타 사유로 책임시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임초과강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단,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3.1, 2012.9.1., 2013.3.1., 2018.11.16.)

제5조(강의시간 산출) 강의시간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4.4.1.)(개정 2025.3.1.)

1. 이론강의는 강의시간수대로 계산한다.

2. 실험·실습·실기 및 이론·실습 병행 교과목은 <별표3>에 따라 계산한다.

제6조(초과강의시간 제한)

①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시에는 연간 최대 18시간 범위 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5. 9. 19.)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시에는 학기당 최대 9시간 범위 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5. 9. 19.)

③ 임용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9. 19.)

(전문개정 2025.3.1.)

제7조(외부출강) (삭제 2010.3.1)

제8조(초과강의료의 지급) ①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한 경우에는 연간 최대 18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개정 2000.9.1, 2010.9.1, 2012.9.1., 2013.3.1., 2016.3.1., 2018.5.18., 2024.4.1., 2025.3.1., 2025. 9. 19.)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한 경우에는 학기당 최대 9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다만, 연구중점교원의 경우에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9. 19.)

③ 각 강좌의 수강인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수를 가산하여 대단위 강좌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2.9.1., 2017.12.15., 2025. 9. 19.)

1. 100명 이상 150명 미만: 해당 강좌 시수의 30%(개정 2021.1.15.)

2. 150명 이상 200명 미만: 해당 강좌 시수의 50%(개정 2021.1.15.)

3. 200명 이상: 해당 강좌 시수의 100%(개정 2021.1.15.)

④ 원격(녹화콘텐츠) 강좌의 수강인원에 따른 시수 가산 및 대단위 초과강의료 지급 기준은 관련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4.10.18.)(개정 2025. 9. 19.)

⑤ 시간당 지급 기준액은 매년도의 예산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한다.(신설 2019.7.12.)(개정 2024.10.18., 2025. 9. 19.)

(조 제목 개정 2016.3.1.)

제9조(강의료 지급 기준액) (삭제 2019.7.12.)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 1항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와 제3조 2항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중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2006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의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2008년 3월 1일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 제2항은 2011학년도 제1학기에 한하여 각 대학(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유예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의 단서조항은 2012학년도 제1학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9.21. 201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1.16. 2016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5.17. 2017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17. 2017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5. 2017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 제2항의 대단위 강좌 초과강의료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2017년 12월 15일 현재 강의 및 교육대체활동을 전담하는 교원으로 구분된 비정년트랙 교원은 재임용 시까지 기존의 책임시수(3~6시간)를 적용한다.

부 칙<2018.02.09. 2017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20. 2018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5.18. 2018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단, 제 4조는 개정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7.12. 2019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 규정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2. 제5조 제4항은 2018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정년트랙 전임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2.21. 2019학년도 제1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1.15. 2020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19. 2021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5.21. 2021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9.17. 2021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02.10. 2022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2.14. 2023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3.15. 2024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8.16. 2024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0.18. 2024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20. 2024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4.18. 2025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9.19. 2025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2. 12. 2025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2. 13. 2025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3. 20. 2026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_정년트랙 전임교원 책임시간>(신설 2025.3.1.)(개정 2025.4.21., 2026. 3. 1., 2026. 7. 1.)

정년트랙 전임교원 책임시간

구분		연간 책임시간	연간 학부 책임시간	학기당 최소 담당시간
정년트랙		18	15	6
음악대학(원) 및 현대실용 음악학과	일반	26	22 (전공실기 14)	9
	클래스수업 10시간 이상	20	16	7
	학과장	18	14	6
책임시간 감 면 대 상	부총장	0	-	-
	일반대학원장, 학장, 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교육혁신 원장, 학술정보원장	6~12	3	0
	교무위원회 규정에 따른 교 무위원(총장, 부총장, 일반대 학원장, 학장, 처장, 연구산 학협력단장, 교육혁신원장, 학술정보원장 제외), 특수대 학원장, 전문대학원장, IR센 터장, 성신인권센터장, 입학 관리실장, 교수학습지원센터 장, 디지털혁신센터장, 창업 지원센터장, 교수대의위원회 회장	12	9	3
	부처장, 연구산학협력단 부단 장, 연구윤리센터장, 성신건강 복지센터장, 국제교육원장, 평 생교육원장, 박물관장, 성신미 디어 주간, 대학재정지원사업 (부)단장, 성신유치원장, 교수 전임입학사정관	12~18	9	3
	학과(부)장	12	9	3
	정년퇴직 전 2년 이하의 교원	12~18	9	3

1. 보직 임면, 연구년, 휴·복직, 1학기 퇴직, 2학기 임용 및 기타 사유로 연간 1개 학기만 강의하는 경우
에는 연간 책임시간의 2분의 1을 해당 학기 책임시간으로 한다.
2. 각 대학원 소속 교원은 연간 학부 책임시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3. 음악대학 및 현대실용음악학과 소속 교원의 전공실기 의무시간은 학부 수업에 해당한다. 대학원
소속 교원은 학부 전공실기 의무시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4. 학기당 최소 담당시간을 강의하지 않은 교원은 강의시간 이행계획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교원 책임시간 감면에 해당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2_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책임시간>(신설 2025.3.1.)
(개정 2025.4.21., 2025. 9. 19., 2026. 3. 20.)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책임시간

구분		학기당 책임시간
비정년트랙	교육중점교원	12
	연구중점교원	0~3
	음악대학(원) 및 현대실용음악학과	16 (전공실기 7)
책임시간 감면 대상	교육혁신원 및 국제교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겸직 교원	6~9

1. 음악대학 및 현대실용음악학과 소속 교원의 전공실기 의무시간은 학부 수업에 해당한다. 대학원 소속 교원은 학부 전공실기 의무시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3_실험·실습·실기 및 이론·실습 병행 교과목 강의시간 환산표>
(개정 2025.3.1., 2025. 12. 12.)

실험·실습·실기 및 이론·실습 병행 교과목 강의시간 환산표

수업 형태	세부구분	강의시간 인정기준
실험· 실습· 실기	실험·실습·실기 강좌	강의시간수
	음악대학 및 현대실용음악학과 1:1 레슨	강의시간수
	간호학과 임상실습	학점당 1.5시간
	간호학과 실습실 교육 교과목	학점당 2시간
	교육실습, 보육실습, 현장학습, 인턴십 등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강의	별도로 정한 시간
	창업실습교과	강의시간의 50%
	창업현장실습교과	강의시간의 30%
이론· 실습 병행	이론·실습 병행 강좌	강의시간수

1. 간호학과 임상실습 교과목의 강의시간은 학점수의 3배수로 편성한다.